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05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문진석・박홍배・이기헌

이광희 · 정성호 · 이병진

복기왕 • 염태영 • 김교흥

정준호 · 장종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생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④ 사업주는 폭염·혹한 등 기
	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
	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
	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냉방
	·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u>④</u> 사업주가 제1항부터 <u>제3항</u>	<u>⑤</u> <u>제4항</u> -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	
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	
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